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인정보단말기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관련 제공자 및 행위자로 하여금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7월 27일)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단계적 시행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 1) 적용 대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에 있어, 제조사·개발사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기획·개발 및 설치·운영 시 적용 여부를 사전 인지할 수 있고, 단말기 적용 여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 중 우선구매 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인용

-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 3) 고시 중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설치 기준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
(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7 신설)

- 1) 적용 대상 응용소프트웨어를 정함에 있어, 대표적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스마트패드·스마트워치)를 명시하고, 해당 장치 내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그 외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
-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3년 7월 28일, 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 3) 고시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따르되,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의 종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제2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중 설계지침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면(前面)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보 및 하부에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3.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면에 점형블록의 설치 또는 음성안내 제공,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질감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 수단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 권고
 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임과 이용 시 필요한 수단 및 방식을 알 수 있는 안내문, 그림 표지 또는 전자적 신호 등
-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및 제11항(종전의 제8

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그 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의 준수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구매 및 설치 전에 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설명 정보의 제공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어, 문자 등을 통해 의사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
5.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2026년 1월 28일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각 단계별 적용 대상기관 중, 20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도 2026년 1월 28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중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행위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별표 7의 행위자 등에 따른 각 적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각 단계별 적용 대상 기관 중, 20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각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단계적 범위	제공자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교육기관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이동 및 교통시설 등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등 마.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바.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복지시설 등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용자 중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체육과 관련된 시설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별표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단계적 범위	행위자 등
1. 2023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교육기관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이동 및 교통시설 등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등
2.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복지시설 등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용자 중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3.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사업자 나.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 다. 법 제3조에서 정한 체육과 관련된 시설 라. 법 제3조에서 정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의 종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에 따른다.</u> <u>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6과 같다.</u> <u>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 법</u>

제15조제3항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제2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중 설계지침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면(前面)

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의 확보 및 하부에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화면내의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3.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면에 점

형블록의 설치 또는 음성안내 제공,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질감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중 오류

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을 때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
 계 수단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을 통해 장애인
 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
 권고

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정
 보단말기임과 이용 시 필요한
 수단 및 방식을 알 수 있는 안
 내문, 그림 표지 또는 전자적
 신호 등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
 프트웨어”란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워치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와 그 외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
 프트웨어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당

<신 설>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의 준수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구매 및 설치 전에 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설명 정보의 제공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시 장애인이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어, 문자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

5.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⑦ ----- 법 제21조제3항

-----.

⑧ 법 제21조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 -----

⑩ 법 제21조제5항-----

-.

⑪ 법 제21조제5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1